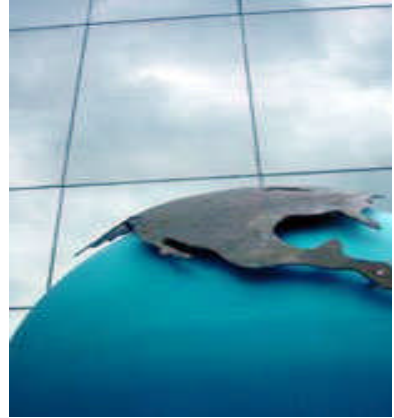


# CKP International Alert

July 2010

By Hoon Kim (949.757.0900 or [hoonkim@ckpcpas.com](mailto:hoonkim@ckpcpas.com))

본 뉴스레터는 미국 5대 회계법인인 RSM McGladrey의 멤버펌이자 미국내 한국계 최대 회계법인인 Choi, Kim & Park, LLP가 다국적기업 고객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Executive Summary 이므로 중대한 의사결정시에는 전문가의 별도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 체결

지난 4월 G20 회의에서 협의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협정이 OECD의 중재로 5월27일 15국가간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체결로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또는 공조 하에 세무조사 진행, 조세 징수 협조, 정보교환 등 광범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5국가는 한국, 10개 주요 유럽연합국가, 미국, 멕시코, 2개의 남미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협정에서 교환한 정보의 철저한 비밀유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를 감시하고 보장할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체결국 중 아시아 국가로서는 한국이 유일한데 이는 한국정부의 역외탈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 국세청은 2009년 3월 미국 주도로 2004년 설립된 국제조세피난처 정보센터 (JITSIC)에 가입하였고 2009년 9월에 국제조사과내에 역외탈세정보 수집센터를 개설한 후 정보기관과 공조하여 이미 수천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스위스 국회는 스위스은행인 UBS가 미국정부에 미국납세자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에따라 UBS는 조만간 4천명에 달하는 미국납세자 고객명단을 IRS에 제출하게 된다.

## IRS 내 국제조세 불복 심사 및 분쟁조정기능 확장

미 국세청(IRS)은 향후 국제거래의 양과 복잡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제기업과의 조세분쟁도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조세불복(appeal) 심사기능과 인원을 대폭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거래와 외국 중소기업의 미국내 거래에 대한 IRS와의 조세분쟁을 신속히 대응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 조기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마찰과 벌과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비거주자의 미국 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심사 강화

IRS 국제조세국 최고책임자는 지난 6월17일 보도자료에서 “국제기업과 외국인 비거주자의 미국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라고 밝혔다. 비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용역비가 아닌 물품대 또는 다른 형태로 지급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특별히 거론하였다. 이에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거주자 용역관련 비용에 대한 과세당국의 감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자 운동선수나 연예인, 종교인들의 미국내 활동과 보수에 대한 것도 이 범주에 해당된다.

## 미국 비영리단체의 외국단체 지원금에 대한 원칙

IRS는 과세가 면제되는 국내 비영리법인이 외국 비영리기관에 기부금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비과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 원칙은 기부된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재량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전가격과 회계원칙상 불확실한 조세위험 (Uncertain Tax Position)

새로운 미국회계원칙 (FIN 48)은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 한 후 추정금과 벌금을 내게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판단된다면 그 추정금과 벌금을 추정 계산하여 장부에 우발채무로 계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IRS는 그러한 회계조정이 있으면 정기세금보고서와 함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전가격 조사와 이에 따른 소득조정 금액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추정 가능성과 또 추정 금액 산출에 특정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전가격 전문가를 보유한 감사인이 많지 않다는 것과 전통적인 감사절차보다 이러한 불확실한 조세문제 판단에 치중함으로써 독립성의 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적용

2010년 2월 SEC 만장일치로 미국 상장사들의 IFRS 적용을 지지하였고 당초 2014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실적으로 한해가 늦춰진 2015년 filing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2011년중에 도입일정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SEC가 종전에 취하였던 자발적 IFRS 조기적용 허용을 철회하였으며 다른 안건인 US GAAP과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미확정상태로 남겨두었다. 2011년부터 IFRS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 2011년 재무제표의 기초잔액이 될 2010년 재무제표의 결산부터 실제적인 IFRS 적용이 시작된다.

## 멕시코 마킬라도라 규정 변경

멕시코 세무당국(Hacienda)은 그 동안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의무조항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여러조항 변경을 7월1일자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였다. 다음은 대표적인 변경내용이다.

- 조세목적상 감사보고서 (Fiscal Dictamante) 폐지 (2009년 보고서는 7월26일까지 제출기한 연장)
- 최저한세 (IETU) 보고 방식을 월별에서 1년에 한번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 (IVA tax) 연간 보고서 폐지

이에따라 멕시코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계 마킬라도라의 회계와 세무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끝.